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19 선고 2024가단3265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0. 22.

판결 선고2024. 11. 19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3. 12. 20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4. 4. 12. 접수 제542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이영갑

별지